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Advantage of a Rescissory Action for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사안의 개요

-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외 7필지 지상 반포 주공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6. 27.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 제18조 제1항, 부칙 10조 제1항에 의하여 2003. 7. 1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2) 피고는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5. 2. 26.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720명 중 1,551명의 참석과 1,089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05. 9. 24.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831명 중 1,033명의 참석과 945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의결한 후, 2005. 10. 2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 (3)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2006. 4. 1.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부분 및 추가공사로 인한 정비사업비의 증감과 아파트 일반분양가 및 임대분양 매각대금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금의 변경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2009. 7. 7.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결의하여 2009. 11. 13.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4) 원고들은 종래 이 사건 아파트 중 18평형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재건축결의와 달리 신축건물의 세대수 중 소형 및 대형 평형을 늘리고 중형평형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총사업비도 50% 가량 증가시켰으므로 실질적인 재건축결의변경 또는 정관변경에 해당하고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에도 일반의결정족수만으로 의결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2012. 3. 22. 2011두 6400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 (1) 항소심(원심)에서 당초 관리처분계획 이후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거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바, 원심은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나 이전고시의 일부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원심에 대해 원고들은 이전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고(상고이유 제1점),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발생으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이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상고이유 제2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 (3)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4) 아울러 대법원 다수의견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판례 평석

- (1)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제1점에 관한 판단에서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는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인 데 반해,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이후에도 일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별개의견이다. 이는 이전고시 이후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 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개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주체의 권리구제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지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 (2)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 (3) 반면, 대법원 별개의견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였더라도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도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관리처분계획과 별개의 처분으로 보는 이전고시의 기본적인 성격 및 효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소송의 목적 달성 및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